

Welfare
Issue
Today

2015
3. 24
vol. 24

복지이슈 Today

편집인의 글	3	폭력 없는 사회 : 사회적 배제 해소가 답이다 / 김지영
이슈	4	[이슈 ①] 늘어나는 노인학대 : 현황과 대책 / 배숙경
	5	[이슈 ②]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 김예원
	6	[이슈 ③]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 인식개선 캠페인보다 정책변화를 / 이동현
	7	[이슈 ④]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 김승경
	8	[이슈 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아동친화적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정재훈
	9	[이슈 ⑥]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 / 최경숙
이슈와 통계	10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절실 / 권민정
해외동향	12	[미국] 저소득층 복지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노력 / 전체경
	13	[영국] 영국 가정폭력 개념의 확대와 적용 / 전미양
	14	[독일]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통합적 가정폭력예방사업 : BIG Prävention / 박은정
	15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과 폭력의 사회적 책임 / 이은주
	16	[스웨덴] 고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 통합정책 / 이재연
	17	[일본] 일본판 도가니 운쵸엔과 피조치(被措置) 아동을 위한 학대방지책 / 박지선
	18	[일본] 가족기능 회복을 통한 고령자 학대 방지 정책 / 이성한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복지이슈 Today

편집위원회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장, 장애인직업재활학 박사, 편집위원장)
김승연(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사회복지학 박사)
김지영(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위원, 교육학 박사)
안철홍(서울시복지재단 전략경영본부 기획조정팀 차장)
윤희숙(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정책학 박사)

집필진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동학 박사)
김예원(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권민정(독일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은정(독일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지선(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초빙강사, 보건복지학 박사)
배숙경(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사회복지학 박사)
이동현(홍리스행동 상임간사)
이성한(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이은주(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이재연(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유럽지역학 석사)
전미양(영국 요크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전채경(미국 미주리대학교 공공정책학 박사과정)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정책학 박사)
최경숙(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폭력 없는 사회 : 사회적 배제 해소가 답이다

연초부터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눈물과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이미 만연된 폭력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2014 서울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2005년 3,484건이었던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010년까지 꾸준히 줄어다가 2011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 2013년에는 3,869건으로 2005년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 집권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살인과 자살 같은 '폭력치사' 비율이 달라진다는 정신의학 분야의 연구결과¹⁾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회정책의 실패가 사회적 폭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복지이슈Today』 3월호에서는 인간성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이슈1부터 4에서는 노인, 장애인, 홀리스, 아동·청소년 등 학대와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슈5에서는 온갖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의 근본대책은 '공공성 강화' 임을 역설하였고, 이슈6에서는 돌봄대상자들의 인권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슈와 통계에서는 인구이동 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야하는 서울시민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어 주거난민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해외동향에서는 빈곤층,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 고령자 등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인 노력들을 소개했다. 특히 연이은 테러사건으로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이주민 폭력을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했다.

폭력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다. 지극히 사적인 폭력도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 증폭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일찍이 마하트마 간디는 "빈곤은 최악의 폭력(poverty is the worst form of violence)"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난한 민중 속에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한 간디이기에 빈곤의 가공할만한 위력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절대적 빈곤은 많이 사라졌을지 모르나, 날이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새로운 빈곤들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모습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일 것이다.

1) 제임스 길리건 저, 이희재 역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의 충격적 보고서」, 교양인(2012)

늘어나는 노인학대 : 현황과 대책

2009년 노인학대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학대 경험을 한 노인의 비율은 13.8%(71만 명)로 나타났다. 노인 복지법상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와 방임, 경제적 학대를 기준으로 한 협의의 정의에 의하면 노인학대 경험율은 5.1%(26만명)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해 학대현황보고서의 학대건수는 2,674건으로 0.05%에 불과해 조사 결과와 실제 신고건수는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노인보호사업 10주년 기념집에 따르면, 노인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38.3%, 신체적 학대 24.5%, 방임 18.6%, 경제적 학대 9.0%, 자기방임 6.4%, 성적 학대 1.5%, 유기 1.5%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방임과 자기방임 비율이 증가하여 25.0%로 신체적 학대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현재 노인학대 피해자의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노인 4명 중 한 명 꼴(23.6%)로 치매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60세 이상 노인인 노노(老老)학대는 34.3%(1,374명)였다. 학대발생장소는 가정(83.1%), 시설(7.1%), 병원(3.0%) 순이었는데, 시설 내 학대도 2009년 55건에서 251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대책으로 첫째,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소한 폭행이라도 즉시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이 가해자 즉 가족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지역사회 내 통반장, 경로당 학대지킴이 어르신, 관내 밀반찬·식사배달 자원봉사자,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의 신고전화를 통한 점진적 개입으로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발적 도움 또는 발굴이 관건이므로 사회참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복을 입은 은퇴경찰관이 위험지역에 순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둘째, 독거노인, 치매노인, 와상노인 등 학대위험군과 치매, 알코올중독, 정신장애를 지닌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스크리닝과 학대행위자의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 병원 연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사례관리서비스를 연계하여 필요시 해당 전담 경찰관, 병원 사회사업가,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방문간호사 등의 민관통합사례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일본의 경우 치매 즉 인지증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편의점, 은행직원, 지하철 직원 등을 대상으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에 따라 교육청(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에 따른 노인에게 관한 사전교육, 해당지자체(자원봉사센터, 동주민센터 위원회 등)가 협조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화특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설학대예방을 위한 음부즈맨제도의 정례화와, 관내 시설종사자, 이용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원 증원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상담전화(1577-1389)를 운영하며,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경찰과 동행하여 학대상담 및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시설학대에 대한 개입,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응급분리를 위한 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폭주하는 방임과 자기방임 및 시설학대의 예방을 위한 개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글 _ 배숙경

▶ 관련자료

정경희 외(2009) 2009년도 노인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4) 노인보호사업 10주년 기념집: 다져온 10년, 더 나은 10년을 향해,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하면 대부분 '도가니'에서 파생되는 여러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건을 떠올린다. 따라서 지난 2014년 이른바 신안염전노예사건처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게 여긴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운동의 큰 방향인 탈시설운동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보다 재가장애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는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경우는 관련법령상 사치구라는 공적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런 체계가 미흡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살필 여지가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의 양상을 보면, 장애인들이 영리목적으로 유인되어 노동력 및 수급비 등을 착취를 당하거나 지적장애여성들이 간음목적으로 유인되어 성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다양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인 듯 보이나 사실은 유사성을 가진 유기체와 같으므로, 해당 사건에 맞는 전문 원스톱사례지원(법률지원과 사후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장애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상담전화(1644-0420)·홈페이지·이메일·언론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을 접수받는다. 그 중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침해의심사건에 대하여 조사(1차상담, 심층상담, 방문대면상담, 현장조사), 법률지원(소송, 자문, 공문에 첨부한 법률의견서 송부 등), 피해자 사후지원(원스톱서비스로서 가해자와 긴급분리, 피해자 쉼터로의 인계, 의료지원,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원, 생계지

원, 복지시스템 매칭 및 연계)등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대리 및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및 심층조사를 수행한다. 나아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일반인권교육,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시 사후대처방법교육 등 장애인 인권 전문교육과 기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인식개선 캠페인, 지침 또는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 이외에도 전남, 광주, 경기 등 전국 15곳 정도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있으며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 장애인 인권문제의 최전방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자로 기여하고 있는 미국의 P&A (Protection and Advocacy ; 보호와 옹호)를 소개한다. 부당한 장애인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의미인 미국의 P&A 기관은 연방법률에 따라 주지사가 지정하며 공공기관형, 민간위탁형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및 조사, 피해자의 격리 및 기타 보호를 위한 조치,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행정조치 의뢰,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과 기타 법률구조활동,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금지를 위한 연구, 홍보, 실태조사,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금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그 밖에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이 최소 시도단위로 설립 운영되어, 장애인 인권침해현장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속히 확립되길 바란다.

글 _ 김예원

▶ 관련자료

임성택(2012)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제128호(2012.2), pp. 7~59.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 인식개선 캠페인보다 정책변화를

2011년부터 시작된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로 인해 홈리스들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 나한 서울역 대합실에 머물 수 없다. 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구걸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 대상이 되었다. 홈리스들에게는 금(金)초가 돼 버린 담배 한 가지 연을 요량으로 건넌 말 한 마디가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 서울역 주변 상인들은 연합회를 만들어 거리 홈리스들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처럼,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보여주는 징후는 명백하고도 폭 넓게 자리한다.

하나, 이를 어떻게 해소할 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낙인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홈리스에 대한 정책적 명명은 '부랑자'로 시작되었다. 명칭이 시사하듯 그에 대한 정책적 개입 역시 보안 처분을 근본으로 하였는데, 이들을 범죄 예비군으로 규정하여 형벌과 유사한 제재를 받게 한 것이다. 대규모 수용시설이나 국도건설단과 같은 징벌적 강제노동이 흔한 수법이였다.

60~70년대부터 시작된 홈리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범죄화 전략, 즉, 홈리스라는 신분을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규정이 그 유명한 '내무부 훈령 410호'다. 1987년이 돼서야 주무부서가 보건사회부로 변경되며 복지 분야로의 형식적 편입이 이뤄졌고, 사회복지적 개입이 본격화된 것은 IMF를 겪고 난 이후에 불과하다. 즉,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정책의 성과(?)이다.

한편, 홈리스에 대한 피로감 또한 낙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도사태를 넘기면 '실직노숙자'도 사라질 것이란 기대는 빛나갔다. 물론, 기대 자체가 다분히 희망적이었지만, 기대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홈리스가 계속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피로감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이는 '홈리스' 상태보다 홈리스 상태를 살고 있는 '그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파견근로, 의료영

리화, 금융화 등의 문제는 제각각의 문제일 뿐 홈리스 상태와 연관되어 발언되지 않는다.

홈리스 상태의 장기화에 대해 나태, 무기력과 같은 개인적 소인은 강조되지만 홈리스 복지지원제도의 현실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복지선진국에서는 90년대 이후 그 실효성을 상실한 입소시설 중심의 체계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를 정책의 오류가 아닌 홈리스의 자유분방한 심성의 문제로 치환한다.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두루뭉술한 '우리사회의 과제로 이해해서는 해결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은 홈리스의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현상도 일부 병원들의 비위사건만이 아니라 홈리스 정책의 문제로 독해되어야 한다. 홈리스 복지의 문제가 지원 체계 밖에서 드러난다는 것, 적잖은 홈리스들이 복지제도의 손을 잡지 못한 채 변태 의료로 엑소더스한다는 것은 홈리스 복지의 문제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상당히 좋지 못한 징후다.

홈리스에 대한 낙인은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거나 방지하여 나타난 현상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공중분해하는 '인식개선 캠페인'류의 사업이 아니라, 낙인 축적과 해소의 책임이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하루 빨리 지역사회 정착 중심의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

'시설'에서 '주거' 우선으로 정책 프레임을 변경하여 질 환관리나 독립생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공급하고, 홈리스에게는 드문 정상가족 중심의 기존 임대주택 정책에 홈리스들을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1인 가구형 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불량 주거지로 치부할 뿐 정책적 개입이 전무한 쪽방과 고시원을 염가 거처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역시 시급하다.

글 _ 이동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가정폭력은 대개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데다가 가해자의 성행교정 또한 쉽지 않아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피해자 특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보호체계로 인해 구성원 특성별로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가정복귀(또는 부모격리 시)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때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야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어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폭력 재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아동·청소년 발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현행 가정폭력 관련법 상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가 정비되기는 하였으나, 가정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처는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분리되어 있어¹⁾ 가족 전체의 관점에서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원체계가 분절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폭력 피해 대상별로 구분되어 있는 가정폭력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재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는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횟수나 비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은 개인의 발달특성이나 심리적 자원에 따라 회복가능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상담복지센터 등에 가정폭력은 물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쉼터는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연령 제한으로 입소 자체가 거부되거나 가족이 분리되어 입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 그 수와 입소정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성별에 따라 거주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²⁾ 청소년 일시쉼터에는 최소 시도별 1개소 이상, 쉼터 내 남녀 청소년 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피해여성(남성) 쉼터, 개별가구 쉼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쉼터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부모의 직간접적 폭력은 이들의 향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비행과 범죄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확고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글 _ 김승경

- 1) 가정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지원업무는 여성과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및 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 2) 지역별로 개소 수나 입소정원은 상이하나 입소정원이 10명 내외인 일시쉼터가 시도 내 1개소도 채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입소를 위해 타 시도로 옮겨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쉼터 내 남녀 청소년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자 청소년이 입소하면 여자 청소년은 입소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아동친화적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어린이집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 10여 년 동안 주기적으로 언론 보도를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정치인들이 거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대책을 내놓았는데, 명절마다 찾아오는 '성룡 영화'도 아닌 어린이집 문제를 왜 연례행사처럼 접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나온 현란한 말잔치의 대책이 무엇이 모자라 불량급식, 학대, 운영 부정 등이 주기적으로 드러나는가? 모자람의 실체는 바로 '공공성 강화'이다.

공공성 강화가 문제 발생 제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의 큰 흐름이 있다. 일단 큰 흐름을 바로 잡으면 나머지 문제는 프로그램과 교육, 계몽, 단속과 감시 등 기술적 차원에서 해결해가면 된다. CCTV 감시, 경찰의 단속, 보육교사 자질 강화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등이 그나마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먼저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작동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동친화적 보육을 위한 최우선 조건은 높은 수준의 보육교사이다. 그런데 4년제 정규 대학교 과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선택하는 곳은 안정된 보수와 신분을 보장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이윤 논리가 작동하는 민간영리 어린이집의 근무 환경과 보수 수준으로는 이른바 '자질 높은' 교사들을 끌어 들일 수 없다. 아무리 사명감이 있다 해도 여차피 이윤 논리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원장의 처지가 있듯이, 자질 높은 교사들은 본인 기대 수준과 맞지 않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선택하지 않는다. 차라리 다른 분야에 취업한다. 국가의 단골메뉴인 교사자질 향상 대책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질 높은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추구해야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큰 흐름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국가는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켰다. 2012년 3월에 나온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 다음 내용이 나온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요구는 많으나, 민간 위주의 시설 공급체계를 국공립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곤란함. 기존의 민간 공급자 구축(crowding out) 및 예산·부지 확보의 어려움." 그래서 신규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중심으로 연간 20~30개소 수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crowding out'이라는 영어 표현이 유식해 보일지는 모르나, 결국 지역 민간영리 어린이집 사업자들의 저항과 로비에 국가는 손을 들었다는 무력감이 드러날 뿐이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어린이집 사업자에게 배달만 하는 형국이다. 중앙정부에 비하면 서울시는 그나마 공공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보를 보인다.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대를 통하여 국공립 비율을 28%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공립 전환 비용이 적게 드는 가정어린이집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고, 이른바 '서울모델'을 통한 민관 협력형, 공공기관 활용형, 공동주택 활용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제대로 실천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집 문제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공공성 강화는 국공립어린이집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민간비영리법인과 직장어린이집 확대도 공공성 강화의 좋은 수단이다. 독일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30%가 채 안 된다. 그러나 민간비영리법인 어린이집 비중이 거의 70%에 이른다. 민간영리비중은 1%도 안 된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자질 있는 교사들을 끌어들이자. 그래도 발생하는 문제에는 지금 내놓고 있는 '현란한' 대책으로 맞서자. 그러면 최소한 명절 때마다 보는 영화처럼 어린이집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지는 않게 될 것이다.

글 _ 정재훈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육 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노동자의 사회적 역할도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들이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돌봄서비스는 민간시장에 맡겨지면서 영세한 기관들의 하향식 과당경쟁 속에 돌봄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은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돌봄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존중, 나아가 돌봄대상자와 돌봄종사자가 상호존중하는 좋은돌봄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는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저평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어르신돌봄관련 지하철 공익광고나 KBS 열린채널 좋은돌봄 영상 상영 등을 통해 좋은돌봄 문화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이 부분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를 정부와 지자체차원에서 시민공감사업으로 보다 확대·시행한다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돌봄노동시장은 장시간노동과 과중한 업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표된다. 이렇다보니 높은 이직율로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 돌봄노동자 인권보호는 매우 시급하다. CCTV 설치 등의 노동자 감시로는 좋은 돌봄을 기대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등 제대로 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최소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 법적 기준이 준수되도록 지자체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행정지도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돌봄서비스 분야에는 재가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바우처 등 단시간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적정임금 혹은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임금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급제 비정규직 일자리인 노인요양,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사업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상근 정규직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돌봄노동시장의 건전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 데이케어, 요양시설 등 돌봄기관 인증제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등 노동인권 보호 지표를 중요 항목으로 넣는 것도 좋은 돌봄기관을 지원·육성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셋째, 돌봄노동자를 직접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특히 지자체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영역이며,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가 유일하다. 돌봄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대인서비스에 따른 감정노동으로 소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근골격계질환과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일상적인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¹⁾.

이러한 돌봄노동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개별화되어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공감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생활문화적 지원은 좋은 돌봄을 이루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좋은 돌봄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활동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글 _ 최경숙

1)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보고서(2010)에 의하면, 시설요양보호사 80%가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시설요양보호사 33%, 재가요양보호사의 12%가 성희롱에 노출되었으며, 34%의 요양보호사가 업무로 인한 골병,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였다.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절실

안정된 주거는 사회적 기본권이자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복지선진국들에서 주거가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주거복지를 사회통합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공습으로 파괴된 주거지를 복원하던 시절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과 가족구성원에 따른 적합한 주거면적 확보라는 목표를 세우고 주거안정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김혜승 외, 2012).

각국 주거복지의 역사적 배경과 구체적 실현 방법은 다양하지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주거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누려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본다. 둘째, 주거복지 실천을 위해 주거비용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거는 낯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신이 속해 있던 지역사회를 떠나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비가 비싼 서울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서울시의 연령대별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자가주택 비율이 현격하게 낮은 30대는 물론 주택소유 자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 이상 인구 중에서도 상당수가 유출되었다(표 1).¹⁾ 가장 인구유출이 심한 30대 인구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고 특히 서울시 전출자의 59.1%가 경기도로 이동하였음을 감안하면 중장년층의 '서울 엑소더스'가 상당부분 주거비 상승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그림 1).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다. 2013년 현재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수는 2006년에 비해 78% 이상 높아졌다(그림 2).

2010년 이후 둔화된 공공임대주택 증가율이 2012년 후 다시 12% 이상 올라가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노후빈곤을 겪거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평생 살아온 지역사회를 떠나는 노년층도 많다.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없다.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열정적으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 또한 주거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거비용 상승으로 서울에서 밀려나는 중장년층과 집 한 채에 의존하여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년층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애써 일군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중산층의 주거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주거비용 부담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불확실하다. 지자체가 주체가 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보장 차원에서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글 _ 권민정

▶ 관련자료

김혜승·박미선·천현숙·차미숙·김태환·경신원·전희정·정재훈(2012).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통계청(2014). 「2014년 국내인구이동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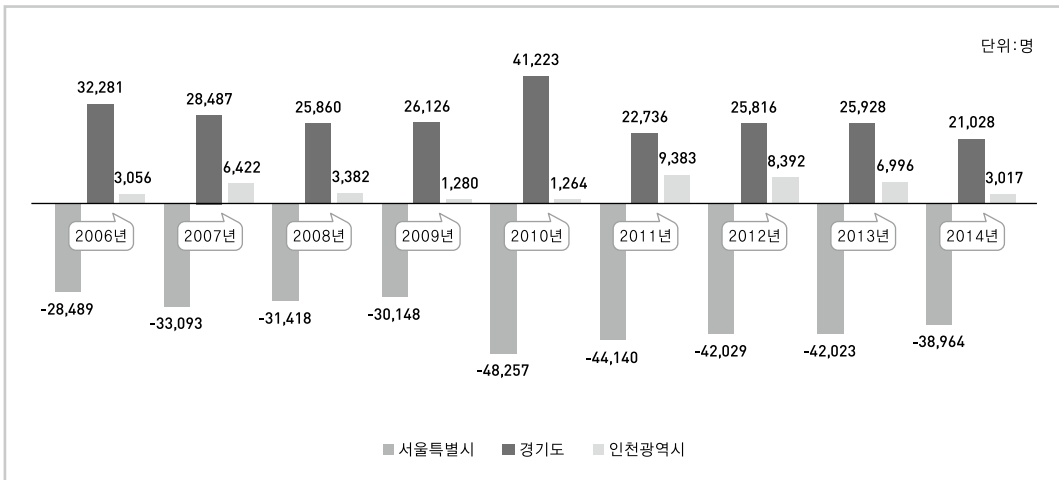
1) 2014 서울 서베이(2013 기준)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연령별 자가주택소유 비율은 30대(13.1%), 40대(40.1%), 50대(60.6%), 60세 이상(59.8%)로 30대의 경우 전월세 비중이 매우 높다.

[표 1] 서울·경기·인천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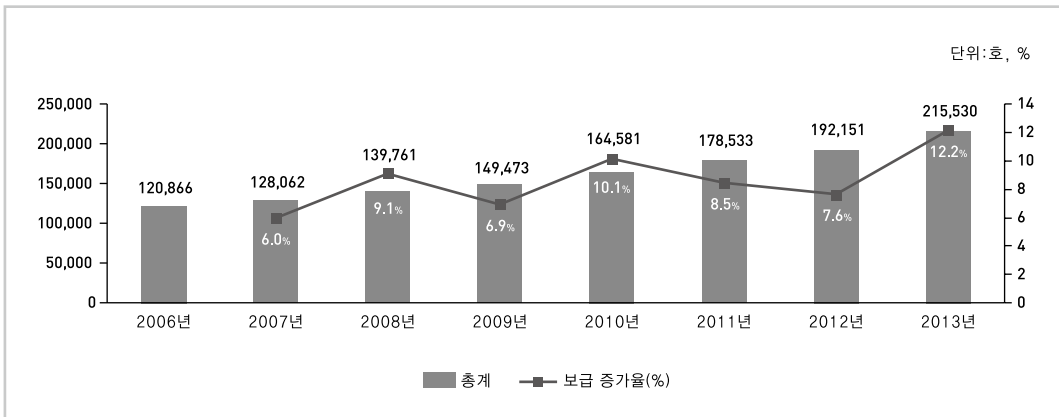
행정구역별	연령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특별시	20대	24,384	26,626	23,587	22,010	11,981	15,607	21,807	20,979	26,300
	30대	-28,489	-33,093	-31,418	-30,148	-48,257	-44,140	-42,029	-42,023	-38,964
	40대	-4,713	-8,395	-9,438	-8,801	-17,602	-18,785	-19,537	-18,270	-18,241
	50대	-10,533	-13,382	-14,538	-12,635	-18,370	-20,508	-20,938	-18,947	-18,431
	60대 이후	-10,682	-13,421	-16,816	-12,984	-19,395	-22,599	-20,701	-20,756	-21,248
경기도	20대	56,212	41,300	31,454	29,524	40,820	23,810	24,048	19,429	16,461
	30대	32,281	28,487	25,860	26,126	41,223	22,736	25,816	25,928	21,028
	40대	6,539	5,979	5,631	5,925	9,946	2,930	4,831	2,634	1,002
	50대	10,204	11,222	10,678	9,070	12,215	6,802	7,120	5,173	3,716
	60대 이후	14,952	13,868	14,353	10,119	13,603	11,264	9,278	9,248	8,887
인천광역시	20대	3,698	7,255	4,396	1,010	900	3,934	5,308	4,248	1,754
	30대	3,056	6,422	3,382	1,280	1,264	9,383	8,392	6,996	3,017
	40대	-100	949	-1,063	-949	335	2,974	3,081	2,602	904
	50대	442	991	-80	-56	-96	2,046	1,984	1,737	220
	60대 이후	1,975	2,413	927	873	1,045	3,310	3,117	2,664	2,070

출처: 국가통계포털, 시도/각세별 이동자수(<http://kosis.kr>)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1] 서울·경기·인천 30대 인구 순이동 추이

출처: 국가통계포털, 시도/각세별 이동자수(<http://kosis.kr>)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2]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보급 현황

출처: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99호(2014.8.18, <http://www.si.re.kr/node/49679>)를 토대로 재구성

저소득층 복지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노력

최근 진 알데이(Gene Alday) 미시시피 주의원이 자신이 '모든 흑인들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일은 안하는 동네 출신이라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인종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미국인들의 편견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개척정신과 개인적 성공이 강조되는 미국에서는 복지수혜자들을 게으른 무임승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며, 세금을 축내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복지수혜자들이 푸드스탬프로 휴가지에서 흥청망청 쇼핑을 했다거나 마트와 짜고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이른바 '복지 사기(welfare scam)'에 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 신문에 등장한다. 철저하게 자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복지혜택을 결정하는 미국의 선별적 복지정책은 복지혜택은 빈곤층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왔으며, 주로 '일하지 않는, 게으른' 빈곤층이라는 편견이 크게 작용하여 수혜자에 대한 낙인을 심화시키고 있다.

식품 영양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필수적인 품목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임산부와 수유부 및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식품과 영양교육을 하는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은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미주리 주에서는 시리얼, 콩, 계란 등을 구매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저렴한 상품만 구입가능하며 유기농 제품 등은 선택할 수 없다. WIC 수혜자는 계산 시 바우처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산원은 그 사람이 WIC 물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 또한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낙인이 싫어서 WIC 수혜자격요건에 해당되지만 웬만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다.

저소득층에게 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은 기존 푸드스탬프(Food Stamps) 수혜자에 대한 복지낙인을 탈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한 사례다. 가디언 지 기사에 따르면 노년층일수록 푸드스탬프에 부여되던 낙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실제 수혜자격요건 해당자 중 3분의 1 정도만이 SNA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SNAP은 푸드스탬프를 통한 복지 프로그램에서 영양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변경을 꾀하는 동시에, 지급수단을 바우처 형식의 푸드스탬프에서 직불카드 형태인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로 바꾸었다. 몇몇 주에서는 WIC 프로그램에도 EBT 카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무료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은 가정에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학교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여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들이 급식비 지불수단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많은 미국인들이 '복지'라는 단어 자체에 갖는 뿌리 깊은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지를 인권으로 보는 개념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글 _ 전채경

▶ 관련자료

- AP (2015.2.17) Mississippi lawmaker under fire for claiming 'all the blacks' in his town get food stamps, don't work. http://www.nola.com/news/index.ssf/2015/02/mississippi_lawmaker_under_fir.html
- The Guardian (2014.4.17) "Food stamps: why recipients are haunted by stigmas and misconceptions". <http://www.theguardian.com/money/2014/apr/17/food-stamps-snap-coordinators-challenges>
- 미국 식품영양지원청 무료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설명페이지 <http://www.fns.usda.gov/nslp/national-school-lunch-program-nslp>

공공정책 분야에서 가정폭력 개념의 확대와 적용

2012년 영국 정부는 '가정폭력'의 개념을 강제 및 통제 행동(coercive control)으로 확대하고, 18세 이상 법적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피해자의 범주를 16세 이상으로 확대했다¹⁾. 정부는 이 확대된 개념을 2013년까지 관련 분야에 적용키로 하고, 가정폭력 방지 정책 집행을 위해 2015년까지 4천만 파운드(약 68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법적 성인이 되지 않았어도 연인, 동거인, 또는 배우자에 의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 경제, 심리, 성과 관련한 모든 범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새로이 논의된 개념이다.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초점이 여성 피해자에 맞춰져 있던 것에 비해, 이 정책은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12개 자선단체를 추가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성폭력 통계상의 남성 피해자는 전체의 12% 규모이나, 현행 지원 체계가 여성 피해자에 맞춰져 있고 신고율이 낮으며 사회적 오명이 크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현 시점에서 세부 정책의 시범적용이 완료되었으며, 영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영국 4개 지역의 파일럿을 완료한 가정폭력 알림 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는 2014년 3월부터 개인이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폭력 전과가 의심될 경우 경찰의 공식적 동의하에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같은 논리로,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의 위

험이 감지될 경우, 대리인 또는 보호 단체가 이를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선기관인 CAADA(co-ordinated action against domestic abuse)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들을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할 가정폭력상담사(Independent Domestic Violence Advisor; IDVA)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 및 보호관찰 기관, 복지, 건강, 교육, 주거, 재할 관련 기관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지역 단체들이 IDVA와 함께 개인의 가정폭력 위험도와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제공하는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지역회의(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s; MARACs)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IDVA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계획이 여러 단체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보호막을 두껍게 하려는 노력이다. 현재 영국 전역에서 270개의 회의가 운영 중이며, 매년 64,000건의 가정폭력 사건을 논의 및 검토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현 정부의 적극적 자세는 공공정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이민법을 유지하면서도, 영국 시민에 의해 가정폭력이 행해진 경우에는 이혼 등에 따른 비자 말소와 상관없이 영주권 발급 및 수당 접근을 허용하는 정책 등에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신념이 나타난다. 이는 가정폭력 피의자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에서 서비스를 전달하여 보다 빠르고 단단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글 _ 전미양

▶ 관련자료

Home Office(2013.3) Information for Local Areas on the change to the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Abuse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42701/guide-on-definition-of-dv.pdf
 영국정부(2013.3.26)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the UK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in-the-uk/supporting-pages/domestic-violence>
 CAADA 홈페이지 http://www.caada.org.uk/marac/Information_about_MARACs.html
 The Survivors Trust <http://www.thesurvivorstrust.org/latest-news/funding-announced-help-male-victims-sexual-violence/>

1) 영국에서는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범주를 동거인, 부부 등 성별에 상관없이 두 성인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아동학대(Child Abuse)'로 보고 개별 보호 체계가 존재한다.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통합적 가정폭력예방사업: BIG Prävention

2004년 발표된 “독일 여성의 생활환경, 안전과 건강” 연구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한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현장을 함께 경험한 아동도 정서불안, 주의력 결핍, 학업부진, 공격성 증가 등의 발달상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성인이 된 이후 관계형성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정폭력의 세대 간 이전 발생확률도 매우 높다. 이 연구결과는 가정폭력 예방과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NGO가 협력하여 학교에서 가정폭력예방 시범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베를린 여성폭력 방지 단체(BIG e.V.)의 BIG 예방사업(BIG Prävention)이다. BIG 예방사업은 학교와 지역 청소년청(Jugendamt)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예방교육과 지원체계를 연계하고 있다. 이 사업은 3개의 목표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아동. 아동의 비폭력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며, 아동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워크숍’,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의 날’이 있다. 먼저, 아동워크숍은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감정’, ‘다툼≠폭력’, ‘가정폭력’, ‘도움받기와 같은 주제’를 4일 동안 다룬다. 아동들은 심한 갈등 및 폭력상황에서의 행동지침과 방어방법, 가정폭력을 함께 경험했을 시 행동지침과 지원 받는 과정을 직접 실습해본다. 워크숍에서는 놀이, 연습과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 역할극, 영상매체 등이 활용된다.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동성집단으로 시행되며, 다문화와 성별화 관점에 유의하여 실시된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 날에는 다른 연령의 아동들이 함께 갈등해결방안, 다툼과 폭력 간 차이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가정폭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배우고, 지원을 받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관련 방법과 시행사항은 교육학 전문가와 교사들이 함께 결정한다.

둘째, 부모. 부모가 가정폭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부모의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과 아동을 주제로 한 부모모임이 있다. 부모들은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지식과 베를린의 관련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지인이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일상적인 양육상황에서의 폭력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토론한다. 그리고 자녀가 아동워크숍에 참여하는 부모에게는 그 내용과 진행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한 모임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학교사회사업가·보육교사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가정폭력 의심사례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행동지침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IG 예방사업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이 성장했을 때 폭력이 재발생하는 악순환이 폭력적인 사회와 가정을 만든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인식이 정책적으로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글 _ 박은정

▶ 관련자료

BIG 예방사업 홈페이지 <http://www.big-praevention.de/>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2014.12.19) http://www.bmfsfj.de/BMFSFJ/gleichstellung_did=88234.html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과 폭력의 사회적 책임

지난 1월 7일 일어난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은 프랑스인들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를 풍자한데 대한 과격 이슬람교도들의 보복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2가지 주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거의 모든 매체와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이 사건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지으면서 언론의 자유의 가치를 크게 내세웠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진실을 보도하는 뉴스일 경우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명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언론과 유사한 개념인 표현의 자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다면 여기에는 나의 권리 못지않게 타인의 신념이나 생각도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는 언어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도 “다른 이들의 신앙을 모욕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이 조롱의 대상으로 되어 서도 안 된다”고 말할 바 있다.

두 번째는 이민정책이다. 이 사건을 일으킨 더 큰 요인은 종교적인 것보다는 이민정책이었을 수도 있다. 201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200만 명이며 이들의 상당수가 이슬람교도들이다. 이중 외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약 530만 명이며 프랑스에서 출생한 이민 2세는 약 67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슬람 인구는 약 470만 명으로 가톨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프랑스 정부는 이민정책의 3가지 핵심을 재차 강조하였다. 첫째는 합법적으로 입국이 되는 외국인의 거주권 보장이다. 여기에는 각종 사회보장인 가족수

당, 주거수당, 의료보장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출되는 재정규모가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입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는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해 주는 사회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출생한 이민 2세가 아닌 외국인 중에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교육제도 자체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사회로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공화국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다. 공화국의 가치는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기본은 다수의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민자들의 권리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법입국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불만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 사건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이민자들이, 무하마드에 대한 풍자를 그나마 자신들을 지탱해 주고 있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폄하이자 자존감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것이고 볼 수 있다.

폭력 없는 사회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개개인의 심성에 내재화 되어 있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의 내적불만이 크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는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1억 5천만 명의 인구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촌에서 각 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정책은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성숙된 배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거주 외국인이 170만 명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 _ 이은주

고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 통합정책

유럽연합 내의 어느 국가보다도 관대한 스웨덴의 이민정책으로 스웨덴의 이민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에 따른 일부 여론의 반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반감은 지난해 총선의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이민자의 수를 현재의 10%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반(反)이민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Sweden Democrat)이 제3당으로 올라왔으며, 당의 비서관 본 소더르(Björn Söder)는 한 인터뷰에서 이민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본국으로 돌아갈수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반(反)이슬람 정서에 따른 직접적인 폭력이 잦아졌다. 2014년에만 14건의 이슬람 사원 공격이 있었는데, 지난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한 주 동안 세 군데의 이슬람 사원에 방화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스웨덴의 일반적인 여론은 이민자의 노동력이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전과 비교하여 특정 종교를 향한 폭력이 잦아지고 극단주의 집단이 기세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통합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2008년에 소개된 새로운 통합정책은 이민자들의 빠른 사회정착을 목표로 했지만, 관련 지표들은 기존의 통합정책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회정착의 중요한 지표인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실업

률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12.6% 포인트가 높다. 이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평균인 7% 포인트보다 훨씬 큰 차이이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통합의 문제를 이민자들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고 있으며, 고용에 도움이 되는 언어와 기술 습득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0년에 새롭게 소개된 내용은 이민자들의 빠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새로운 길(Ny väg in)' 프로젝트이다. 새로운 길 프로젝트는 새로 오는 이민자들의 출신국가별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언어, 스웨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등)을 맞춤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그 밖에도 장기간 실업 상태인 이민자 또는 새로 도착한 이민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로 시작하는 일(Nystartsjobb)', 경험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업무경험을 제공하는 '단기 인턴십(Prova-på-plats)', 기업인들의 멘토십 및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Andersson et al., 2014).

일련의 이슬람 사원 방화사건 이후 스웨덴 시민들은 사건이 있었던 사원의 문에 하트모양의 종이를 붙이며, 그들의 종교를 지지하고 폭력에 굴하지 않기를 바라는 연대의식을 보여주었다. 스웨덴의 고용을 중심으로 한 통합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이에 따라 인종적·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기를 기원한다.

글 _ 이재연

▶ 관련자료

A brief history of immigration in Sweden

<http://www.theguardian.com/news/datablog/2014/dec/11/a-brief-history-of-immigration-in-sweden-democrats-election>

Sweden Democrat: Pay migrants to leave <http://www.thelocal.se/20141214/sweden-democrat-pay-migrants-to-leave>

The rise of the anti-immigrant Sweden Democrats: 'We don't feel at home any more, and it's their fault'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dec/14/sweden-democrats-flex-muscles-anti-immigrant-kristianstad>

Swedish integration policy <http://www.government.se/content/1/c6/13/77/34/5b7683a6.pdf>

Andersson, Ruben., and Weinar, Agnieszka. (2014) Integration Policies – Sweden country report, INTERACT RR 2014/14, Robert Schuman Centre for Advanced Studies, San Domenico di Fiesole (FI):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일본판 도가니 온초엔과 피조치(被措置) 아동을 위한 학대방지책

1996년 일본열도를 들끓게 한 일본판 도가니 '온초엔(恩寵園) 사건'은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지 못했던 시설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대 대응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며 아동복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시킨 계기가 되었다.

시설 내 학대방지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양호의 질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옹호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2009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개정법 제33조 11에서는 '시설직원 등은 피조치 아동 등 학대, 그 외 피조치 아동 등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4조 3에서는 '사업자나 시설 설치자, 위탁부모는 아동,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 및 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함과 동시에 아동복지법 또는 동법에 기초한 명령을 준수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조치 아동 등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통해 피조치아동 등의 권리옹호를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했다. 여기서 '피조치 아동 등'이란 ① 소규모주거형아동양육사업자, 위탁부모, 유아원, 아동양호시설, 지적장애아시설,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또는 아동자립지원시설, 지정의료기관 등에 위탁되었거나 입소한 아동, ② 아동복지법 제12조 4에 규정된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시설,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일시보호위탁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피조치 아동 등 학대'란 시설직원 등이 입소아동에 대해 ①신체에 외상이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는 폭행, ②외설행위를 하거나 외설행위, ③심신의 정상발달을 방해하는 감식(減食) 또는 장시간 방치, ④현저하게 심리적 외상을 주었을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역시 2009년에 작성된 '피조치 아동 등 학대 대응 가이드라인'은 학대예방을 위한 대처, 아동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체제, 시설의 조직운영체제 정비,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안정된 생활 확보까지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기발견을 위한 대처, 통고 및 신고 체제, 초기 대응, 상황과악 및 사실 확인, 피조치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시설 등에 대한 지도, 심의회 체제, 대응 및 공표, 재발방지에 대해 정리해 놓았다.

도도부현을 위한 지침에서는 관계부서 간 연계체제 마련,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구체적인 대응체제 마련, 도도부현 아동복지심의회 체제 정비, 관계시설의 협의회 등과의 연계 및 협의 강화, 피조치아동 등에 대한 주지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학습기회 확보 도모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조치 아동 등에 대한 학대는 여전히 일본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²⁾이다. 그럼에도 한국보다 앞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온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

글 _ 박지선

▶ 관련자료

- 후생노동성 고용규등·아동가정국 가정복지과(2009.3) 피조치아동 등 학대대응 가이드라인(被措置児童等虐待対応ガイドライン)
<http://www.mhlw.go.jp/bunya/kodomo/pdf/tuuchi-45.pdf>
 후생노동성(2014.3.14) 평성24년도 피조치 아동 등 학대신고 등 제도 실시 상황(被措置児童等虐待届出等制度の実施状況)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yougo04-05.pdf

- 1) 온초엔은 치바현 후나바시시(千葉県 船橋市)에 위치한 아동양호시설로 1946년 전쟁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되어 1952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받은 아동양호시설이다. 온초엔 사건이 표면화된 것은 1995년 8월 현내 아동상담소로 걸려온 익명의 전화에서부터다. 1996년 4월에는 입소아동 13명이 집단 탈주, 아동상담소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입소아동학대가 재발각되었다. 당시 밝혀진 학대 내용은 금속베트 및 목검 등으로 때리기, 건조기에 넣어 돌리기, 죽은 닭을 침대에 넣어 함께 재우기, 강간 등이었다. 1999년 일본TV가 온초엔을 거쳐 간 원생 및 직원들을 취재한 결과를 방영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2000년 1월 치바 법원은 드디어 온초엔의 학대사실을 인정하였다.
- 2) 후생노동성의 피조치 아동 등 학대의 신고접수건수를 보면 2009년 214건, 2010년 176건, 2011년 193건, 2012년 214건이었다. 또한 피조치 아동 등 학대 사실이 확인된 건수는 2009년 59건, 2010년 39건, 2011년 46건, 2012년 71건이었다.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일본의 고령자 학대 방지 정책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개호보험이 시행되고 고령 자학대나 폭력이 더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후 2005년 “고령자학대 방지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고령자의 학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06년 12,569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1000건씩 학대건수가 늘어나 2011년에는 16,599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2년에 15,202건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2013년 15,731건으로 또 다시 늘어났다. 상담이나 통보건수도 2012년 23,843건에서 2013년 25,310건으로 증가했다. 피학대자의 비율은 여성의 비율(77.6%)이 높았으며 학대내용은 신체학대(65%)가 가장 높았고 심리적 학대(40.4%), 성적학대(23.5%), 방임(23.4%)순이었다. 학대발생요인은 장애 및 질병(22.7%)과 돌봄스트레스(22.5%)가 가장 높았고 학대자의 유형은 아들(41.6%), 남편(18.3%), 딸(16.1%), 며느리(5.9%)순이었다. 특징으로는 학대자 유형에서 고령으로 갈수록 부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60대가 6.4%, 70대가 15.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노인개호(老老介護)의 증가와 돌봄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고령자 학대의 원인이 현대사회의 가족 기능 약화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가족단위의 지원을 함께 실행하고 있다. 매년 전국단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사례와 대책을 공유하고 있

다. 그리고 지역의 가정재판소에서 선발된 시민후견인들이 일상생활 지원, 전문상담 등의 후견활동을 실시하는 시민후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개호보험 개정과 고령자학대 방지법 제정에 따라 고령자권리옹호추진사업을 실시하면서 각 지자체에 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고령자가 차매나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가 어렵다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금전관리,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면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로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고령자학대상담대응창구를 개설하고 접수된 사례를 담당자 회의를 통해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학대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지자체 별로 독자적인 고령자 학대방지에 관한 매뉴얼 개발을 하고 있다.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서는 고령자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지역 내 연락회를 구성하여 고령자 학대를 초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사카부(大阪府)에서는 보호자가 가족의 문제를 개방하고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가 팀을 이루어 긴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학대는 주로 가족의 과거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대의 경험이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평소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학대 관련 교육과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 _ 이성현

▶ 관련자료

후생노동성(2014) 고령자학대방지, 고령자의 옹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상황과 조사결과(高齢者虐待防止、高齢者の擁護者に対する支援など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対応状況などに関する調査結果) <http://www.mhlw.go.jp/stf/stf/houdou/0000072782.html>

- 1) 지역복지와 주거복지를 연구하고 있는 노구치 사다히사(野口定久) 교수는 고령자 학대 증가의 배경으로 현대가족기능의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은 친밀성, 성별 역할분업, 근대 가부장제 등으로 가족 내에서 역할을 찾고 소통하며 해결해 나갔다. 반면에 현대의 가족형태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희성과 자원공급을 둘러싼 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구성원들은 내부와 단절하고 외부와 소통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가족 내의 학대나 폭력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이슈Today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 본지는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복지자료 → 복지이슈Today)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간부서(연구개발실, 02-2011-0570, jkim@welfare.seoul.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Tel. 02)2011-0570 Fax. 02)2011-0520